

綜合的인 農村計劃의 一環으로서의 農地基盤整備事業 (土地改良)의 方向에 關하여

李 相 賢
(農業振興公社 技術顧問)

I. 現行 農村近代化促進法 및 農地擴大開發促進法

現行 農村近代化促進法 및 農地擴大開發促進法等으로는 農用地에 限하여 土地改良事業을 施行하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關係法의 一部를 改良하여 必要時에는 土地改良施行地域의 非農用地도 事業地區에 包含시켜 生活環境과 聚落의 整備事業을 併行할 수 있는 綜合的인 農村構造改善計劃이 時代의 要請이라고 본다.

1. 背 景

우리나라 1970年代以來 急速한 經濟의 高度 成長에 隨伴하여 國民所得 亦是 急激한 增大를 招來하였으며 特히 農村에 있어서는 세마을 事業等의 擴대로 因한 農家所得이 都市勤勞所得을 上廻할 만큼 增大되어 農家の 生活水準이 顯著히 向上되었음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그림에도 不拘하고 每年 農村의 離農者 繢出로 因한 農村勞動力의 都市流出과 農地의 減少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二律背反의in 現實에 비추어, 政府는 그 原因을 細明하고 時急한 對策을 樹立하여 國家의 不可缺의 要請인 國民食糧의 安定的 供給確保 特히 食糧需要構成의 變化에 對應할 수 있는 商品生產의 擴大와 主產地 形成을 促進하여야 할 것이다.

即市郡 地域의 急速한 都市化, 工業化, 過密화의 擴大가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의 急速한 破壞를 進展시켜 具體的으로는 公害라는 形態로 人間의 生存自體를 威脅하고 있는바 이問題는 單只 都市工業地帶에서 뿐만아니라 漸次 農村地帶에 까지 渾及되어 가고 있어 農村地域의 過疎化 生活環境 社會機能等에

莫大한 影響과 困難한 問題를 惹起시키고 있으며 여기에 對處할 農村社會의 再整備하는 問題가 政策的으로 時急히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이 農村의 再整備라는 問題中에서 가장 重要한 問題가 農村整備事業의 中核的 事業인 農地基盤整備라고 生覺된다.

現在까지의 農地基盤整備事業은 農業生產의 基盤만을 整備함을 目的으로 施行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그地域의 土地와 水資源의 秩序있고 合理의이고 効果의in 利用으로 生產과 生活의 向上을 共히 進展시킨다는 點을 考慮하여 農地基盤整備의 機能에 添加하여 生活環境과 聚落의 整備, 經營近代化施設, 農村工業의 秩序있고 計劃的인導入, 蓄產團地의 設定等을 一體的 計劃的으로 綜合整備함으로서 生產 및 生活環境改善에 對한 큰效果를 期待할 수 있으며 農村의 離農에 依한 過疎化斗 生產減少를 沖止시켜 安定된 營農을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即 從來의 農業食糧增產 對策으로서의 農地基盤整備事業으로부터 農村空間整備事業의 一環으로서의 農地基盤整備事業으로의 轉換의 必要性이 切實히 要請되고 있으며 여기에 農業土木事業의 必然的인 方向進展의 背景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一方 1980年代 中华 以後에는 農業人口比率이 現在 40%에서 20%程度로 低下되고 農家所得率도 現在 農業所得 75%에서 25%로 減少되는 反面 農外所得이 70%以上으로 增大되리라고 政府當局도豫想하고 있으며, 現在 農家所得이 都市勤勞者보다 若干 上廻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一時的인 過渡的 現象에 不過한 것이며 原則的으로 產業의 高度化에 따라 都市와 農村과의 所得의 隔差는 增大될것이明白한 事實이다. 또 農產物의 增產도 거의 限界에 이

는 感이며 糧穀에 對한 高米價政策도 國際價格과의 隔差를 無視하고 繼續할 수 없으며 農村에 있어서의 勞資을 為始한 營農費의 增大추세, 農業中堅從業員의 激減에 依한 農業技術과 生產의 低下等으로 因하여 農業만으로는 生活을 營爲하기 어려워질 것이明白히 豫想된다.

따라서 農村으로서는 農業生產의 手段, 方法, 組織等의 改善을 包含한 세로운 農業像이 要求되어야 할것이다. 即 無計劃的인 人口集中으로 因한 都市의 矛盾을 農村地域의 土地利用으로 解決코자 農村地域으로의 無秩序한 工場進出 住宅用地, 觀光用地, 等의 大資本에 依한 買占은 農村地域에 諸種의 深刻한 問題를 起起시킬 憂慮가 有으로 農地基盤整備事業과 併行해서 各種 施設의 用地等을 秩序있고合理的 效果의으로 配定하는等 農村地域의 主體性를 確保할 수 있는 農業基盤綜合整備計劃과 實施의 necessity이 切實이 要請된다.

2. 目 的

目的을 要約해서 만한다면 農村地域의 土地利用의 合理의 秩序의 確立이라고 할 수 있다.

即 高 生產 農業을 目的으로 한 農地基盤整備事業과 併行하여 營農施設, 生活環境, 聚落等의 整備, 他產業의 秩序 있는 導入, 綠地의 維持, 自然環境의 保全等을 包含한 農村地域의 調和 있는 整備를 實施하여 農業의 勞動 生產性을 向上시켜 될 수 있는 限剩餘 労動力を 都市에 流出시키지 않고 隣近 他產業에의 就業을 擴大시킴으로서 農村地域住民의 所得增大와 文化生活로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農村을 만드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리하여 當該 農村地域의 非農用地도 包含된 綜合整備計劃을 樹立하여 他產業의 秩序 있는 導入을 考慮하면서 農用地, 聚落用地, 施設用地, 公共用地, 畜產用地, 綠地等을 包含한 全體의 土地利用計劃을 樹立하여 農地基盤整備事業으로 營農施設, 生活環境整備, 聚落整備, 工場, 畜產, 公共施設, 綠地等의 計劃을 耕地整理計劃과 同時に 綜合作成하여야 한다.

即 農村에 있어서의 長期의이고도 巨視的인 立場에서 各種 施設의 適正한 配置를 包含한 土地利用區分을合理的 效果의으로 確立하여 近代的 營農에 必要한 諸條件의 整備를 推進하며 여기에 必要한 農地基盤整備 및 이것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生活環境과 聚落整備等을 綜合의으로 計劃推進함이 重要하다.

3. 앞으로의 農地基盤 造成事業의 樣相

現在 實施中에 있는 農地基盤造成事業의 擴大의必要性, 農業生產의 萎縮可能性, 農產物需要의 增大와 高級化 加重等에 對하여는 農業振興公社가 1978. 12. 15日 作成한 “農業生產構造改善을 為한 農地造成方向”에 比較的 詳細히 指摘 記述되어 있어 再論을 避하기니와 最少限 그內容에 記載되어 있는 投資額과 面積은 必要不可缺한 것으로 生覺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볼 때 單只 現在와 2001年後의 人口增加와 各 作物의 需給關係를 投資額과 農地面積擴大와 關聯시켜서 分析한 것이며 그 事業內容에 있어서도 從來의 農地基盤整備事業의 태두리를 넘지 못하고 아무런 質의 變化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筆者が 論하고자 한 것은 背景에서 말한 바와 같이 產業의 高度化에 따른 農村의 急激한 変り가지 變遷에 適應할 수 있는 農村整備의 一環으로서 앞으로의 農地基盤整備에 있어서는 非農用地를 包含한 該當 地域을 整備對象으로 하여 耕地整理를 通하여 農業用地, 營農近代化用地, 公共施設用地, 住居用地, 工場用地, 畜產用地, 公共機關用地, 綠地用地等으로 確定區分하여 本事業에 다 添加하여 生活環境과 聚落의 整備事業을 兼하여 實施함으로서 만이 生產性과 生活의 向上이 同時に 이루어져 離農과 生產의 低下를 遏止하고 農村의 衰退를 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重大한 事實은 現在와 앞으로의 農村은 별개 農業人만의 農村이 아니며 漸次 2次產業 3次產業과 混合된 農村으로 變貌 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이 傾向은 더욱 農村人口面에 있어서나 所得面에 있어서 顯著化될 것이다.

따라서 農地基盤整備事業에 있어도 從前처럼 農業만을 目的으로 한 事業計劃을 止揚하고 農村居住民全體를 為한 生產과 生活의 向上을 圖謀할 수 있는 方向 即 生活環境과 聚落의 整備等을 包含한 綜合計劃을 樹立 實施하여 強力히 推進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앞으로의 農地基盤整備事業의 方向의一面이 있는 것이다.

또 農村에 있어서의 土地와 水資源의 利用秩序의 變化는 重要한 意味를 가진 것으로 農業人口의 減少兼農化的進行, 非農家の 增大 生活의 都市化, 工場, 住居等의 無秩序한 進出等 一連의 變化中에서 土地利用에 있어서로 都市的 要素가 無秩序하게 浸透해 올에 따라 水資源利用에도 上水道, 工業用水等의 利用轉換이 漸增하여 往往 土地와 水資源의 高

度利用을 阻害할 뿐더러 一定한 土地形狀, 規模 또는 水質과 水量을 必要로 하는 農業의 利用의 成立을 威脅하게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農業生產活動을 守護하면서 資源의 轉換을 調和的으로 할 수 있는 綜合計劃을 農業基盤整備事業으로 解決해야 할 것이다.

上述한 바와 같이 農地基盤整備事業은 農村整備의 中核의 事業임으로 이 事業의 擴大와 同時に 質의 轉換은 現下 農村問題의 根本의 解決策이 될 것이다.

政府도 產業의 高度化와 併行하여 安全 基盤위에 的 經濟成長을 指向할 것을 目標로 社會開發의 積極化方針을 宣明한 바 있다. 即 社會開發을 為하여는 國內의 社會資本의 充實을 為한 建設投資가 果敢히 增加擴大되어야 할 것이며 特히 農村建設을 為한 整備事業에 置重해야 할 것이다.

至今까지는 農政에 있어서 農產物增產에만 一貫하였으나 앞으로는 上述한 바 農村社會의 急激한 變化에 따라 離農과 生產低下를 防止할 方法은 結局 農民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農村을 만드는 道理 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意味에서도 生活環境과 聚落整備事業을 農地基盤整備事業과 漸次의 으로 併行해서 實施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므로서 經濟成長과 農村 住民 生活과의 平衡이 투이어질 것이다.

이와하여 分散된 農家를 集團化해서 基礎生活圈乃至 第1次, 第2次 生活圈을 形成하여 生產空間의 核이 되어 이核을 中心으로 農地로 連結되며 農地는合理的인 區劃으로 整備되고 機械化營農으로 變하고 生活圈의 範圍에 相應한 日常生活圈이 形成될 것이다.勿論 農業用地, 公共施設用地, 住居用地, 工場用地, 畜產用地, 文化施設用地, 公共機關用地, 綠地等과 用水問題(農業用水, 工業用水, 上水道用水)等도 耕地整理와 同時に 整備되어 農業人뿐만 아니라 農村居住民 全體의 均衡있는 發展의 基礎作業이 成就될 것이다.

II. 農村地域內 非農用地의 土地整備必要性

農村地域에 있어서 農用地外에 整備해야 할 土地의 種類 및 그理由는 다음과 같다.

1. 農村地域의 生活環境과 聚落의 整備

產業高度化에 依한 經濟成長의 增大에 따라 國際的으로는 自由經濟와 自由貿易의 變動幅이 擴大되

어가고 있으며 여기에 國內의 으로는 農業도 이에 對應할 수 있는 體質改善이 當然히 要請되고 있으며 또 農村地域에 있어서 現在 및 앞으로 農業만의 農村의 存在價值는 漸次 稀薄해지고 第2次, 第3次 產業과 調和된 農村이 來아야하며 同時に 農村地域의 中核인 農地基盤整備事業도 그 質의 變化가 時急히 要請되고 있어 現在까지 論外로 하였던 農村의 生活環境改善事業의 同時 實施가 切實한 問題로 提起되는 것이다.

即 經濟成長에 依한 農家所得의 增大에 따라 農家가 自己自身의 生活向上에 着眼하게 되어 農村 住民의 生活環境을 改善하지 않는限, 離農 繢出等의 結果로 農村에는 老人과 婦女子만이 남게 되어 農業技術 및 農業生產의 低下를 招來할 憂慮가 深化됨으로서 앞으로의 農地基盤整備事業에는 生活環境과 聚落整備 計劃을 同時に 作成하여 漸進的으로 實施함이 要請된다고 본다.

生活環境의 構成은 大體로 生活施設과 生活用地(聚落)로 大別할 수 있으며 生活施設은 그 生活圈 人口規模과 住民의 利用에 適合토록 農業生產 施設을 비롯한 日常生活에 必要한 모든 公共施設等을 體系的으로 整備하도록 할 것이며 生活用地는 住民生活을 가장 安全 및 快適하게 營爲할 수 있는 場所로서 整備되어야 할 것이다.

即 當面의 農村地域의 生活環境整備는 生活施設의 體系化와 生活用地의 合理的 秩序를 세우는데 있다고 할 것이며 前者는 施設의 整備(生活施設整備)後者는 土地의 整備(聚落整備)로서 이 兩者的 一體的 整備가 生活環境整備의 基本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生活環境 整備事業은 主로 耕地整理事業과 同時に 計劃되어 實施함을 原則으로 할 것이며 整備內容은 公共的生活施設의 整備를 為始하여 聚落과 聚落間의 配置, 聚落內의 道路整備, 上下水道 供給處理施設, 不良住宅의 除去, 聚落間 또는 農地와의 連絡道路 整備等의 區劃整理를 實施하여 土地의合理的의 利用을 圖謀하는 目的으로 한다.

2. 農業協同 施設用地의 整備

農業生產의 近代化를 為한 農業協同施設인 共同作業場, 農機械센타, 共同畜舍, 選果場等 農業施設用地는 宅地로서 農用地가 아닌 關係上 耕地整理의 對象外임으로 共同減步로서 用地를 捏出할 수 없으며 所要의 土地를 立地條件이 좋은 場所로 確保하기 困難함으로서 聚落에서 좀 멀어져서 農地와의 交通이 便利한 場所를 指하여 耕地整理時에 用地確保와 連

絡道路를 新設할 必要가 있다.

3. 公共用地의 整備

耕地整理에 包含된 農道外에 生活圈外의 道路用地, 農地에의 連絡道路用地, 河川擴幅改修用地, 中小 學校用地, 公民館과 公園用地等이 必要하다.

4. 林地, 原野의 整備

現 關係法으로는 林地, 原野를 開墾할때에 限하여 事業施行의 對象이 될수있으며 道路, 導水路等이 林地原野를 通過��에는 所有者의 同意를 얻어서 買收하여야 하며 이事業으로 因한 地價上昇時에도 工事費賦課가 不可能함으로 必要한 林地, 原野를 事業區域에 包含整備하여 共同減步 工事費賦課의 對象으로하여 그 代替地를 換地處分으로 取得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畜產을 為한 牧野地 整備에도 必要하다.

5. 工場用地의 整備

產業의 高度化에 따른 工場의 農村進出은 不可避한 問題이다. 都市의 高地價, 勞働力 確保難, 高賃金, 都市公害等으로 農村地域으로 擴大 分散되어도 交通이 發達되어 큰 支障은 없으나 無秩序한 進出은 阻止되어야 하며 絶對農地의 確保와 農外所得이 切實이 要請되는 農村으로서는 工場用地를 農用地外에서 整備할 必要가 있다. 工場導人에 있어서는 公害問題를 慎重히 考慮하여 農村地域에 까지 都市公害가 浸透되지 않도록 特히 注意하여야 할것이다.

6. 住宅用地의 整備

農業生產도 漸次 主產地 生產을 為한 大規模화傾向에 있으며 農家所得 增大로 因한 生活水準向上과 交通發達로 全國一日生活圈이 形成되었으나 農村地域에 있어서는 聚落內에서의 畜舍, 農業施設, 汚物等에 依한 公害問題, 教育, 醫療의 未備, 無秩序한 工場 進出等으로 聚落의 再整備乃至 統合 移轉이 不可避한 實情에 있다.

即 住民生活 營爲에 가장 便利한 場所를 指하여 聚落內의 道路, 上下水道의 衛生施設, 公民館, 公園等 公共施設의 整備事業이 必要하다.

7. 畜舍用地의 整備

聚落內에서의 畜產은 粪尿에 依한 惡嗅, 病虫 發生等으로 우물과 農業用水의 水質污濁의 原因이 됨

으로 農用地外에 過地를 指함이 必要하며 이리 함으로써 耕地整理와 畜產振興의 一體化가 可能할 것이다.

8. 綠地, 公園의 整備

農村의 自然環境 保護를 為한 措置로 耕地整理時에 用地確保가 所望된다.

9. 墓地의 整備

耕地整理時에 集團墓地 用地를 確保하여 整備할 수 있다.

以上 여의가지 非農用地의 整備는 急變해가는 農村地域 住民의 生活과 生產性 向上을 為한 生活環境 整備에 不可避한 것으로서 여기에 現 關係法의 一部分을 改正하여 土地改良事業 (農地基盤整備事業)에 非農用地도 包含시켜 事業을 施行할 수 있도록 해야할 理由가 있는 것이다.

III. 現行 關係法中 一部改正案

1970年代 以來 우리나라의 產業高度化에 依한 經濟成長 特히 農村地域에 있어서의 세마을 事業等에 依한 所得增大에 相應한 生活環境을 向上시키기 為하여는 現行 關係法의 一部分을 時急히 改正할 것을 建議한다.

即 “土地改良事業의 施行에 있어서 宅地, 林地, 原野等 非農用地에 對해서도 그 所有者, 其他 關係權利者の 同意를 얻어 施行地域내에 包含시켜 實施할수 있게 함과 同時に 土地改良事業 實施에 隨伴된 換地의 方法에 있어서도 創設換地, 異種目換地等에 關한 세로운 制度를 두어야 한다. 그 理由는 耕地整理事業等 換地를 隨伴한 土地改良事業의 一層圓滑한 實施를 圖謀하며 農用地의 集團化等 農業構造改善의 推進과 이리한 事業實施를 機會로 土地改良施設에 必要한 公共施設用地, 營農의近代化合理化에 必要한 農業用 施設用地外에 農村住居者の 住宅用地 農村地域에의 工業導入을 為한 工場用地等도 併하여 確保코자하는 것이다”

創設換地；從前의 土地의 權利가 없어도 換地處分에 依하여 換地를 定한것을 意味함.

異種目換地； 어느사람의 從前의 地目에 對하여 換地處分으로 別種의 地目的 換地가 交付됨을 意味함.

IV. 法一部 改正案 通過後의 事業 施行에 있어서의 몇 가지 留意 事項

法一部 改正案이 通過되었다고 해서 生活 環境 및 聚落整備事業을 全般的으로 農地基盤整備事業과 同時に 實施하기에는 여러가지 問題點이 있다. 郡豫算의 뒷 바침과 政府 關係部處間의 調節問題와 農水產部內의 各局 所管의 調整과 協調가 있어야 할것이다. 또 事業이 具體化할때 까지는 計劃의 基準, 方法等 基礎調查가 必要하며 充分한 準備作業等 細部制度도 檢討 作成되어야 할것이다. 이러한 準備作業이 끝난後에 實施段階에 있어서도 示範地區選定에 充分한 檢討를 加하여 最初에는 各道에 1~2 地區 程度選定해서 漸次 擴大해나가야 할것이다.

即 農地基盤整備事業과 一體의으로 整備할 必要가 있는 生活環境 整備事業은 土地改良을 管掌하는 農地管理局 乃至 農地開發局에서 實施하고 營農施設 關係는 農政局이나 農產局 等 所管局에서 農業構造改善事業等으로 同時 添加施行한다는 形態로于先은 農水產部內에서 할수있는 事業만으로 推進하면서 漸次工場導入, 就業構造等 他部處의 關聯部分도 解決擴大해나가는 것이 가장 適切한 方法일 것이다. 單 各種施設의 用地計劃等은 耕地整理計劃時에 一括해서 綜合計劃되어야 할 것이다.

V. 日本에 있어서의 農村總合整備 事業의 現況

日本 亦是, 10餘年前 우리 나라 現況과 비슷한 背景과 目的으로 準備作業을 마치고 至今으로부터 8年前인 1972年에 土地改良法 一部改正으로 非農用地에도 事業施行이 可能하게되어 農業生產基盤整備事業과 一體의으로 聚落整備等을 為始む 生活環境整備事業을 할수있는 總合事業制度, 換地制度 等의 取扱改善을 斷行하여 農業聚落을 基礎로 生產基盤과 生活環境을 一體의으로 整備할 必要性에 의한 農村의 總合的 整備 事業이 促進되고 있다.

이 事業을 施行함에 있어 大別하여 農村基盤整備 總 Pilot事業, (以下 總 Pilot事業으로 略稱)과 農村 總合整備 Model事業 (以下 Model事業으로 [略稱])의 兩事業으로 區分하여 推進하고 있다. 이 兩事業을 比較하면 兩事業 共히 農業生產基盤과 農村生活環境을 一體의으로 整備한다는 點에서는 共通성을 가지나 兩者間에는 基本的 思考方向과 制度等에 있

어 다음같은 差異가 있다.

區 分	總pilot事業	Model事業	備 考
生產基盤	◎	○	◎ 主要工事
生活環境	○	◎	○ 合쳐서行하는工程

即 總 Pilot 事業은 地域의 總合的 土地利用計劃에 依한 農業生產 基盤 整備의 集中的 總合的 實施를 主目的으로하고 이와 密接한 不可分의 農村生活環境만을 整備함을 目的으로 하고 Model 事業은 農業生產基盤整備와 農村生活 環境整備의 兩者的 整備를 總合的으로 實施함을 目的으로하나 土地基盤整備가 比較的 잘 되어있는 地域의 生活環境改善에 主目的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總 pilot 事業은 農業生產基盤整備가 되어있지 않은 地域에 主로 實施하고 Model事業은 一段 耕地整理 事業이 되어있는 地域에 主로 實施하고있다고 할수있다.

VI. 既設 農地改良組合地區의 再整 備 事業實施 問題

30~50年前에 實施한 事業은 工作物의 老朽化等으로 漸次 그 機能을 失失하였음은勿論 營農의 近代化에 따른 農業機械化에도 對應기 困難함에 비추어 全面的인 再整備事業實施와 同時に 生活環境과 聚落整備事業을 併行하여 農村地域의 土地利用을 合理的으로 計劃하여 農村住民의 生產과 生活의 向上을 圖謀함으로서 安住할수있는 農村의 建設이 要請된다.

VII. 現業機關(代行機關)의 一元化 와 強化 問題

不足된 技術者の 活用, 財政의 節約을 為하여 農地改良組合과의 一體의體制確立이 要請되는바 이에 副應기 為하여 農地改良組合을 基幹組織體로하는 強力한 機構를 設立하여 事業, 財政, 人事의 一元化를 期하여 事業의迅速圓滑한 推進이 要請된다.

VIII. 國營 農業土木試驗所의 設立 問題

莫大한 國家投資에 依하여 實施中인 農地基盤整備 事業은 過去는勿論 現在, 未來에 걸쳐 國民食糧의 安定的 供給確保를 為한 莫重한 事業이며 農村基盤整備의 中核的 事業임에도 不拘하고 이 事業

의 學問的, 技術的, 實驗的 뒷바침이 될 研究機關의 命脈이 거의 끊긴 狀態에 있다는 것은 真實로 恨歎之事이며 하루速히 國營 農業土木研究所의 設立이 必要不可缺의 狀態인 것이다.

隣國 日本의 國營 農業土木試驗場의 機構研究 内容 施設을 參酌한다면 그 必要性은 알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끝 맛 음

以上은 農村整備의 中核的 事業인 農地基盤整備事業의 今後 方向에 對하여 現在 우리나라의 產業高度化에 依한 農村地域의 急激한 變貌에 對應하여 나아가야 할 方案과 이를 뒷바침할 몇가지 問題에 關하여 써 본것이다.

要은 앞으로의 農村地域은 從前과 같은 農業人만의 農村이 아니라 第2次, 第3次 產業과 共存하는 農村으로 漸次 變遷되어 갈것이며 農家所得 亦是 農業所得 보다 農外所得이 漸次 增加되어 갈것이 確

實함으로 農地基盤整備事業의 方向 亦是 增產만을 為한 從前의 施策에서 脫皮하여 農村居住人 全體를 為한 生活環境과 聚落整備事業을 添加施行 함으로서 生產과 生活의 向上을 期하여 참으로 살기 좋은 새마을 새農村을 建設하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이를 為하야 政府는 앞으로의 社會資本의 充實을 為한 投資를 農村地域 整備事業에 果敢히 또 重點的으로 投入하여야 할 것이며 政府機構도 事業規模, 投資額, 技術의 高度化等에 따라 擴大해야 할 것이다.

또 極히 重要한 點은 農村이 單純한 農業生產의 場으로써 만이 아니라 健全한 農村의 存在야말로 國防安保에 至大한 關聯이 있다는 點을 깊이 認識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上述한바 内容은 筆者の 平素의 所信과 1970年代를 前後하여 現在에 이르는 日本에 있어서의 農業生產基盤整備事業의 追移를 參酌하였음을 밝혀둔다.